심사보고서

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700 2024. 10. 18.(금) 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0월 11일

-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)

가. 제안사유

O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O 출연목적

-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·가족 정책 연구,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

○ 출연 예정금액: 1,616,466천원 (도비100%)

O 출연내역: 충북여성재단 운영비, 사업비

○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(기준보조율)	(B)	(C)	(D=C-B)
도비(100%)	1,479,460	1,616,466	137,006
부 문 기즈비즈의	2024년 출연금	2025년 출연계획	증감 (D=C P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종합 검토의견

O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.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제8조(재정지원 등)는 재단의 설립·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O 종합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2017년 2월에 설립한 기관임.
- 지역맞춤형 연구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유일의 성평등 교육·연구의 거점기관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출연은 타당함.
- 2025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출연금 대비 137,006천원증액되었으며, 주요원인은 인건비 기본급 자연증가분을 비롯해 행정시스템 변경 추진에 따른 웹기안기 구매 등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결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」

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의 안 번 호 700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O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O 대상기관: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·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('17.2.17.)된 기관으로
 -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출연 예정금액 : **1,616,466**천원(도비100%)
- O **출연내역** : 충북여성재단 운영비, 사업비
- 기대효과
 - 도민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 - 여성·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
- 3. 의안전문 : 붙 임
- 4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- 5. 기타

① 출연 심의요구서

	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주관부서 	양성평등가족정책관	오경숙	김명희	김태미	220-3913

기 관 명	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							
	○ 이 사 장 : 김 영 환							
 출자:출연대상	○ 일반현황 : (소 재	지) 충북 청	주시 상당구 똑	목련로 27 (현원	^뎶 /정원) 15/15			
	(주요시	업) 성평등	문화 확산 및	여성·가족 의	ᅾ량강화 교육,			
		여성•기족	등 정책조사 연구	및 지원, 성주루	화 과제 컨설팅			
	○ 출연 예정금액 : 1	,616,466천원	<u>원</u> (도비 100%)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	성사항			(단위 : 천원)			
출자·출연	구 분 2024년 당초예산액	2025년 예산액*	계	재원별 도비출연금	순세계잉여금 등			
시 업 비	계 1,540,843			<u> </u>	62,377			
					·			
	* 수탁기관 수익금 제외 :	중묵성멸영영	명가센터, 여성	긴급선와 1366 8	중묵센터 			
출자·출연 필 요 성	○ 지역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							
	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 							
	○ 충북여성재단 설립	및 운영 지	원 조례 제8	조				
근거·법령	 ※ 제8조(재정지원 등) 도계			나업에 필요한 기	자금을 충당하기			
	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							
	○ 충북여성재단은 대내외 여성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·							
	적극적으로 대응하	고자 노력히	h고 있음					
	○ 민선8기 도정 운영	방향에 맞춰	회, 아이키우기	좋은 충북도	실현을 위한			
	정책연구 과제를 진	l행하고, 시·	군을 찾아다니	1며 운영하는	성평등 교육			
│ 지도감독 │ 부서일견	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임							
(충 평)	○ 특히, 2025년도에는	- 지역 성평	등지수 향상	방안, 돌봄공동	통체 조성방안			
	연구, 가족친화인증기업 성과와 과제, 양성평등 네트워크 프로그램등 신규업무를 통해 지역의 여성·가족, 성평등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시기로, 이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지원하는							
	것이 타당할 것으로	로 사료됨						
	1. 관리 감독부서 검토	트결과서						
첨부지료	2. 출연기관 현황							
	3. 출연사업계획서							

□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(경영평가)

- 고객중심 의견수렴 구조 및 관리 체계 구축
-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도내 유관기관 업무협약 확대 운영

○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
- 자체수입률 증가 노력 필요

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의 연구·개발과 충북여성의 능력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
- '17년 설립, '18년~'20년은 출범 이후 재단 조직 안정화 및 정착 시기였으며, '22년 파견공무원 복귀완료와 함께 충북여성재단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, 여성의 권익 증진, 여성·가족 교육·연구,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,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
- 특히, 재단은 성평등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현안업무 및 신규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·추진 중이며, 보다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원안의결을 건의드림

③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	2024년	2025년 예산안					
내 역	예산액(최종) (C)	기 관 요구액 (A)	실 과 검토액 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		
충북여성재단 운영	1,479,460	1,616,466	1,616,466	-	137,006		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	출연의	유사	사업방식	사업의	투자대비	재원분담
명확성	타당성	중복성	효율성	시급성	효과성	적절성
여	Ċļ	뿌	ĊЯ	여	Ċļ	

①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 북 여 성 재 단

설립근거	- 민법 제32조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						전화번호	立: 043-285-2421	
주요연혁	- '17. 2. 17. : 충북여성재단 설립 기관형태					출연기	기관(재단법인)		
A) A) =) =)	계 정규직			,	2개 센터				
인원현황	3	34			15			19	
	구 분				두 및 직위			기 간	
	이 사 장]북도지사 ** 기기 기기 기기	التا جا يا			재임기간	
	당연직이사			여성재단 디				재임기간	
	당연직이사			불도 기획관	*		0000 0	재임기간	
	선임직이사		_	사무소 세범				. 17. – 2025. 2. 16.	
	선임직이사)충북문화재	난 내표이사			. 17. – 2025. 2. 16.	
	선임직이사			등음 대표	ו אן דן.		-	. 17. – 2025. 2. 16.	
임원구성	선임직이사			충청북도의호				. 17. – 2025. 2. 16.	
	선임직이사			H대학교 교수		M 7 01		. 17. – 2025. 2. 16.	
	선임직이사				개발연구소 선임	ゼーゼ		. 17. – 2025. 2. 16.	
	선임직이사 선임직이사			궁육역성단점]스아이엔 전	협의회 회장 			. 17. – 2025. 2. 16. . 17. – 2025. 2. 16.	
	선임적이사 선임직이사							. 17. – 2025. 2. 16.	
	선임직이사 허○○ 前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023. 2 당연직감사 오○○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							. 17 2025. 2. 16. 재임기간	
	선임직감사			3 독고 <i>6</i> 6 7 6 7 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		2023 2	. 17. – 2025. 2. 16.	
	26764	1 100	141.0	3 의 게 됩 근	1717		2025. 2	. 17. 2025. 2. 10.	
조직	이사회	(13명)		이사장(도지/ 대표이사(상급		감사(2명)		
				<u> </u>					
	경 영	팀정착	 백연구년	팀 교육	사업티	< 수탁운 (별영향평기		<수탁운영> 여성긴급전화1366	
주요기능					배발 및 교육, 여성관련 사업	추진	등	십 향상 및 역량	
자본금 (단위 : 백년	1 만원)	1	100		출자 · (단위 :	출연 역 백만원		1,479	
최근3년간	연도	2022 2	023	2024	재무현황		(A=B+C)	291	
예산 현황	예산액	1,550 1,	510	1,540	(백만원)	부	채(B)	34	
(단위 : 백만원)	지자체 지원액	1,444 1,	404	1,479	'23.12.31.기준	자.	본(C)	257	
경영성과					 총비용		, ,	기순이익	
(단위 : 백만원) '23.12.31.기준		2,496			2,605		ठ/ा±°। न △109		

①-③ 출자-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충북여성재단 출연	그브	출자	
주관부서	양성평등가족정책관	丁亚	출연	1,616,466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, 민관 소통 역할 수행
-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 기능 수행

□ 출연개요

○ 사 업 명 : 충북여성재단 운영

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
○ 총사업비 : 1,678백만원(출연금 1,616백만원, 순세계잉여금 등 62백만원) ○ 주요내용 : 여성·가족 정책조사·연구,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및 교육

(단위:백만원)

○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제8조

□ 산출기초

 구 분
 금액
 산출내역
 비고

 합 계
 1,678

 운영재원
 1,671

 인건비
 1,009
 - 재단 직원(15명) 보수 등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, 성과급 등)

인건비 1,009 - 재단 직원(15명) 보수 등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, 성과급 등)
경 비 269 -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수선유지비, 자산취득비 등
사업비 393 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예 비 비 7

※ 수탁기관(성별영향평가센터·여성긴급전화1366센터) 사업비 별도

□ 기대효과

-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- 여성·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충북여성재단은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, 도비 출연금은 재단 존립과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금액임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 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